

##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
### 문의안내

① 2021.6.23 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별경력, 미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② 결격사유 확인방법

- (성별경력) 출입 전 교사자격증 신청 시, 대체원에서 일괄 조회됩니다.
- (미약류 중독여부)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자정 의료기관(서전문의 필요)에서 개인별 검진 후, 경관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태학에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자주하는 질문 Q&A

Q1. 교사자격취득 신생자들은 미약류 중독 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A1. 미약류 중독여부는 의료기관의 진찰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미 의사, 약사, 간호사, 영양사 등 의 지적(면역) 척도를 위해서는 미약류 중독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. 다만, 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, 비용을 절감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시, 신생자에 한하여 미약류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 후 침시결핵통보서를 교사자격취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Q2. 국가건강검과 연계할 경우, 미약류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2. 교사자격취득(전)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국가건강검진 시, 교사자격 취득을 미약류 검사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별도의 검사표지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는 교육부·건강관리협회·메디체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, 타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.  
\* 검사 방법은 미약류 중독여부 판별 표준인지를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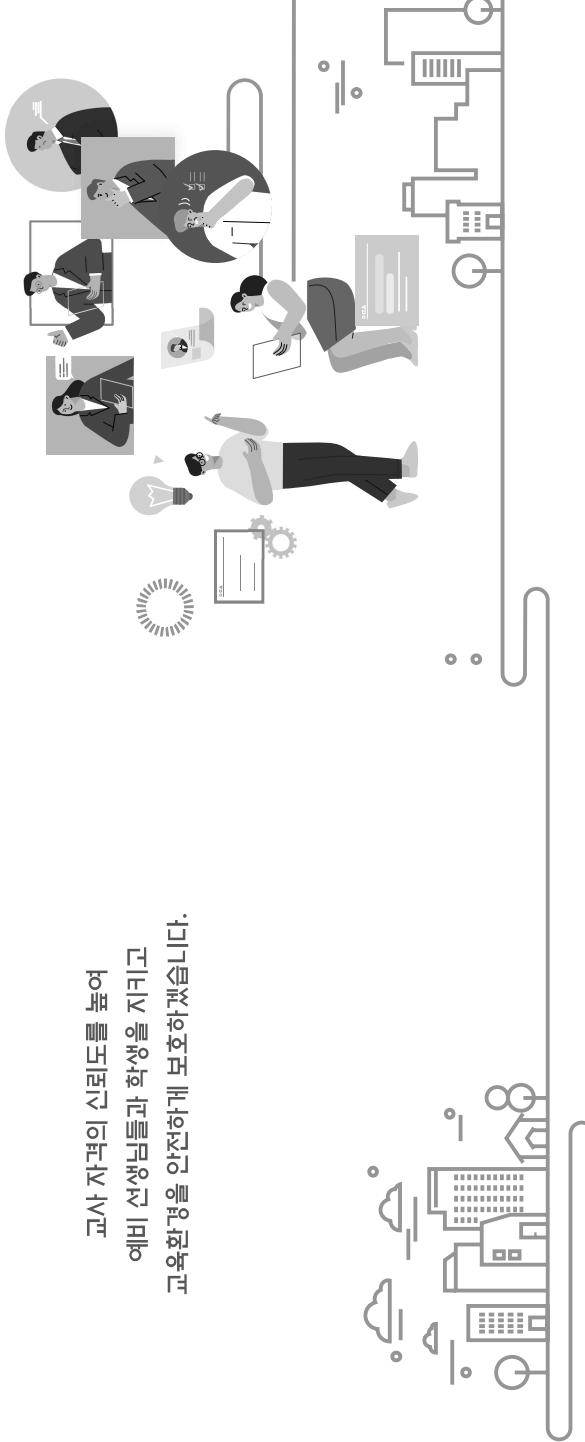
Q3.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, 미약류 사용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?

A3. 치료 목적의 약물은 미약류 사용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,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미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증명되면 결격 사유로 하당하지 않습니다.



#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
〈예비교사용〉



교육부  
Ministry of Education

교육부  
Ministry of Education

